

자본재 개발품목 301개 선정

통상산업부는 올해 신규개발 대상 자본재 전략품목으로 301개 과제를 26일자로 확정 고시하고 품목별 개발사업자 공모에 들어 갔다.

이번에 확정된 301개 품목은 일반기계를 포함한 기계류 부문이 179개로 전체의 59.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전기 전자 부문 87개, 소재 부문 35개 품목 등이다.

주요 대상은 기계류의 경우 플라즈마 탈황과 탈진 시스템, 3연 고수압 블란드 펌프, 유리 건조장치 등이다.

또 전기 전자 부문은 300mm 데스크급 실리콘웨이퍼, 메탈 건식 식각 장치, 인터넷 전화신호 변환용 서브와 관련 주변장치, 고음질 스피커용 세라믹 진동판, 표면실장형수정 진동자와 발전기 등이가.

소재부문에는 코발트 분말, 폴리스폴, 반도체 트라이용 도전 성수지 등이 포함돼 있다.

통산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지난 해보다 10% 늘어난 2천억원의 시제품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자금 대출금리도 지난해보다 1% 포인트 낮은 연 6.0%로 조정해 개발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품목당 지원한도도 지난해보다 10억원 증가한 30억원으로 올렸으며 정부가 개발 필요성을 인정하는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억원 이상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통산부는 이들 전략품목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수입대체 45억3천만달러, 수출증대 30억1천5백만달러 등 총 75억4천5백만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97 대전첨단전자전』 참가안내

우리나라 전자정보산업을 대변해 온 본회는 지난 27년간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전시회인 한국전자전

(KES)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전자산업국으로 성장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정보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95년부터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의 산업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는 한편 수출업체의 제품과 기술 홍보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본회는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통상산업부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는 「'97 대전첨단전자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대전지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엑스포 개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 서울·대전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등 첨단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전자정보산업을 이 지역의 중추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대전광역시는 본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멀티미디어, 영상/통신기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최첨단제품이 전시될 예정이며 전시기간중 AEU(아시아 전자 연맹)기술 세미나가 동시에 개최되어 업계관계자는 물론 일반인, 학생 등의 폭넓은 관심과 호응이 예상되오니, 「'97 대전첨단전자전」에 회원사 및 전자정보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 아 래 -

1. 전시회명 : (국문) '97대전첨단전자전
(영문) KES-Taejon '97
2. 전시기간 : 1997. 5. 21(수)~5. 26(월), 6일간
3. 전시장소 : 대전무역전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277-3)
4. 전시규모 : 5,100s/m(약 1,500평),
10만명 참관예상
5. 전시품목 : 멀티미디어, 영상/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전자게임, 자동차용 전장품, 계측기, 가정용·산업용 전자정보제품 및 관련 부품 소재 일체

6. 참가신청 : 1997. 2. 10부터 선착순 접수마감
 7. 문의처 : 본회 국제부 전시과
 Tel.(02)553-8725, 565-3576,
 553-0941/7
 Fax.(02)563-7371, 563-7339,
 555-6195

'96년기준 광공업 통계조사 실시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약 30%를 점하고 있는 광업 및 제조업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생산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시책의 효과분석, 국제비교,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키 위해 광공업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는 이번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보조조사원이 지역내의 종사자 5인이상인 광공업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9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지난 1년간의 광공업부문의 구조변동과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사는 통계작성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통계조사를 통해 수립된 개일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 개별사업체의 비밀은 엄격히 보호되며, 조사대상 사업체는 성실히 자료를 제공할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본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조사범위 및 대상
종사자 5인이상의 모든 광업, 제조업사업체
- 조사대상기간
1996. 1. 1~12. 31(1년간)
- 조사실시기간
1997. 4. 1~4. 31

조사사항
연간출하액, 생산비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기술연구개발비, 유형고정자산, 종사자수 및 급여액 등 17개 항목

조사방법
읍·면·동 담당공무원(또는 보조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결과공표
- '97년 12월경 잠정 공표 예정
- 최종 결과 보고서는 '98. 4월중에 전국편 및 지역편으로 나누어 발간 예정임

주요 결과자료
- 산업별·연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급여액, 생산액, 출하액, 재고증감,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등
- 산업별·경영조직 및 자본금 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급여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등
- 산업별·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급여액, 생산액, 출하액, 재고증감액, 생산비 등

중소기업 부조리신고 및 처리 전담반 활동 안내

감사원에서는 1997. 3. 17부터 중소기업에 불편을 주는 과도한 규제·단속을 완화하고 관련공직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를 개선시키며, 각종 부조리와 관폐 등을 근절시킬 뿐 아니라 인력공급과 자금지원을 원활하게하여 중소기업창업과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시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 부조리신고 및 처리전담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1) 기능
중소기업의 창업 및 운영과 관련한 고충, 불편사항

과 관련기관의 위법 부당행위 수집 및 직접조사처리

-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행정규제 및 이와 관련한 관폐 등 각종 부조리
- 준조세성 경비의 강제징수
- 공직자 무사안일로 인한 기업피해
- 법령 및 관련규정 부당적용
- 행정기관간의 비협조로 업무처리 지연

2) 신고 : 전화, FAX, 우편 등 신고인이 편리한 방법 선택

○ 전담반

- 감사원 : (전화)7219-077, (FAX)7219-088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5-23 (우 : 100-706)

- 중소기업은행 본점내 감사원 부조리신고 접수처 :
(전화) : 729-6666, (FAX)729-7777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우 : 100-758)

※ 단, 중소기업은행 본점내 접수처는 1997. 3. 17부터 3. 31까지만 개설운영

- 감사원 188신고센터 : (전화) 188(크로바전화) 080-023-0188

4. 조사 및 처리

원칙적으로 전담반에서 현장출장하여 조사한 후 경미한 사항이라도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 처리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 '97교육 및 세미나 계획 수립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는 기업의 수출촉진과 기술자원을 위하여 관련업체

를 대상으로 '97교육 및 세미나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다.

연중 교육 및 세미나 계획은 ISO9000/14000 개요 및 발전방향 등 총 33건으로서 분야별로 품질인증분야 12건, 의료기기분야 7건, 측정기술분야 4건, 기술감리분야 2건, 환경관련분야 2건, 재료분석평가 3건, 기타 3건이다.

품질인증분야에서는 5월중 독일 VDE소장인 Dr Dreger를 초청, 유럽지역 수출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유럽의 인증제도와 VDE의 향후 발전계획"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며, ISO관련 세미나는 연구소 내에서 실시하는 것 이외에 기업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연 5회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기기분야는 관련제도의 개정에 따른 기업들의 제조, 수입, 허가의 요건사항인 품질관리기준에 대하여 4~9월중 7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며, 측정기술분야는 길이, 온도, 전기분야의 정밀측정기술교육과 함께 연구소 인증담당자로 부터 ISO인증과정 중 필수 구비사항인 측정기의 관리체계 구축에 관하여 심사과정에서 체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 산업설비의 안전제고를 위한 기술감리분야와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관련분야 등에 대하여도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한다.

연구소는 이같이 연중 교육 및 세미나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문의처 :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 시험평가연구소

Tel : 8601-222/224(기획팀)
8601-232/234(예산팀)

진흥회게시판

기간	구분	부서명	내용	문의처
3월		표준계측부	길이분야 정밀측정기술	8601-502
		"	온도분야 정밀측정기술	8601-522
상반기		품질인증부	X선/Laser-Radiation에 대한 기본 이론과 측정법	8601-477
4월		의료기기부	우수의료용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해설	8601-432
		"	의료용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5월		기술감리부	음식폐기물 감량화처리시설 인증제도 개선방안	8601-542
		품질인증부	유럽의 인증제도와 VDE의 향후 발전계획	8601-452
		의료기기부	수입의료용구 품질관리기준 해설	8601-432
6월		품질인증부	CE마킹 획득절차 및 실무	8601-452
		"	CE마킹 인증지원 및 규제동향(EMC지침)	8601-464
		의료기기부	의료용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8601-432
		표준계측부	전기분야 정밀측정기술	8601-512
9월		품질인증부	CB-FCS제도 설명회	8601-482
		의료기기부	우수의료용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해설	8601-432
		"	수입의료용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해설	"
		"	의료용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기술감리부	진동, 소음, 구조해석을 이용한 진단기술	8601-382
		기술개발부	CAM프로그램 작성 및 기계조작 방법	8601-364
		"	전자세라믹스 조성분석	8601-392
		"	세라믹재료 분체특성 평가	8601-394
		"	자성재료 자기특성 평가기술	8601-393
10월		품질인증부	IEC335-1 규격 용어해설	8601-479
		표준계측부	자가측정설비 정확도 관리	8601-525
		기술감리부	2중 금속접합체의 비파괴시험 평가기술	8601-554
11월		기술감리부	환경부고시 관련업무 세미나	8601-532
1회/분기		기술개발부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방법	8601-476
		"	신뢰성 시험방법	8601-475
미정		품질인증부	ISO 규격해설 및 내부감사원 과정	8601-450
		"	IS9000/ISO14000개요 및 발전방향	8601-451
		"	ISO9000/ISO14000 내부감사원 과정	8601-454
		"	문서화작업, 기록작성 및 유지방법 해설	8601-454
		"	계측기 관리자를 위한 전문과정	8601-455
		"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무역실무교육	8601-413

※ 연구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진흥회게시판

산업재산권 진단 및 보호체제 구축사업 진단과제 모집안내

지금 세계각국은 급변하는 기술환경속에서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과 기술을 산업재산권화 시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WTO출범 등으로 이러한 선진국들의 특허공세는 더욱 치열해져 가는 추세로 산업재산권 관리체제가 미흡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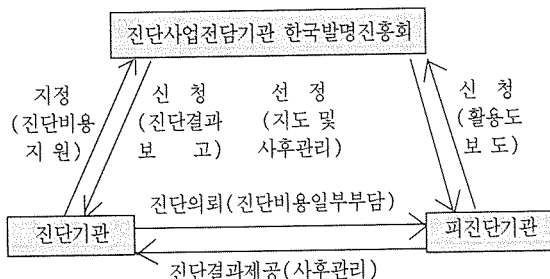
이에 한국발명진흥회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과제 대상을 진단기관으로 하여 국내·외 선행 기술조사 및 분석을 통한 R&D 추진방향과 분쟁발생 대응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청 고시 제97-2호(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에 의거 산업재산권 진단 및 보호체제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업 지원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피진단기관의 진단과제 모집 및 선정 과제에 대한 산업재산권 진단을 수행할 진단기관을 추가 지정코자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진단내용(범위)

-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자체구축DB 또는 대민특허정보서비스 기관의 특허 DB를 이용하여 관련 기술의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및 기술정보 수집
- ♣ 수집된 특허기술정보를 분석하여 기술정보적, 경영정보적, 권리정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PATENT MAP 작성
- ♣ 조사된 특허기술정보와 PATENT MAP을 활용하여 핵심기술실태분석, 시장 및 기술동향분석, 국내외 경쟁기업 실태분석 등을 통한 연구개발의 추진방향 제시 및 문제

2) 지원절차(수행체계)



3) 지원비율 : 1과제당 총진단비용의 50% 이상

2. 신청자격

- 1) 피진단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제품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를 그 구성원으로한 업종별 단체 또는 조합,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견기업 및 기관
- 2) 진단기관 : 발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원,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 기타 특허 법률사무소 등 특허관련업무의 수행기관으로 진단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3. 신청요령

① 신청서류

- 피진단기관 :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진단과제 선정 신청서5부(소정양식)
- 진단기관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신청·사업계획)서 10부(소정양식)

② 접수시간(공통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피진단기관 및 진단과제 : '97. 4. 16(수)까지
- 진단기관 : '97. 4. 7(월)까지

③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17 성우아카데미 5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관리부, 137-070

④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신청

⑤ 제한사항 : 진단과제는 1개기관(업체) 당 3개 과제까지 신청가능

4. 권리의무사항

- ♣ 효율적인 진단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의 관

리지침 성실시행

- ❖ 선정된 피진단기관은 진단에 대한 정부보조금 이외의 소요 자금부담과 진단과정중 발굴되는 산업재산권의 소유
- ❖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결과는 피선정자에 개별통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 관리부로 문의바람(전화 : 557-1077/8, 555-6892 교. 211/213)

노동법 재개정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노동관계법 재개정안은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대대적인 노동계 재편에 불가피해졌다. 또 고용조정제(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도입으로 기업은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평생직장 개념은 사라지게 됐다. 무노동무임금원칙이 법에 명시됨에 따라 무분별하게 파업할 수도 없게 됐다.

노동법 재개정안은 작년 말 신한국당이 단독처리한 개정법에 비해 노동계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것과 정리해고제 요건이 강화되고 시행이 2년 유예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복수노조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는 상급단체에 한해 즉각 허용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한국당이 개정안을 단독처리하면서 불허로 바뀌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당초 정부안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 되었다.

이처럼 상급단체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동단체도 경쟁시대를 맞게 됐다. 민주노총이 법의 테두리안에 들어와 합법적 활동을 벌이게 된 반면 한국노총의 독점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이같은 변

화가 상급노동단체간 조직확장경쟁으로 이어져 산업현장이 견잡을 수 없는 노사분규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예전과는 달리 합부로 파업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노동법 재개정안은 파업기간 무노동무임금을 명시하고 있다. 당초 개정안처럼 파업기간 임금지급을 금지하진 않고 있으나 사용자측에 지급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일 경우 처벌한다는 강력한 조항까지 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파업을 하려면 근로자들은 임금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파업기간 동일사업내 단체근로를 허용한 것은 파업으로 인해 경제가 마비되고 궁극적으로 노사 모두 상처를 입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되면 사용자는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신 투입해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5년후부터 금지기로 한 것도 노동계의 대규모 변화를 예고한다.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재정이 약한 중소기업 노조는 전임자를 대폭 줄이든지 산별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정리해고제의 경우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해고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등 노동계 불만을 상당히 줄이는 선에서 타결됐다. 고용조정을 단행 할 수 있는 길은 터줘야 한다는 경영계측 요구와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는데 대한 노동계측 불안과 저항을 절충한 셈이다.

경영계측에서는 정리해고 요건이 완화되고 시행이 유예된 점이 가장 큰 불만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정리해고가 노동계 최대불만으로 부상하는 바람에 당초 정부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변형근로시간제는 경영계측 요구대로 「1개월 단위, 56시간」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일감이 많고적음에 따라 주단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

진흥회게시판

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노동계 요구는 「2주단위, 48시간」이었다. 그러나 하루 12시간으로 근로시간상한을 정함으로써 채길 만큼은 채진 셈. 노동전문가들은 재개정 안에 대해 여야 합의로 만

들어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노동법과문화노동계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바람에 과연 법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렸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요 쟁점 비교〉

쟁 점	종 전	개정된 법	여야 재개정안
복수노조	전면금지	상급단체 2000년 부터 단위 사업장은 2002년부터 허용	상급단체 즉시허용, 단위사업장은 2002년부터 허용
제3자개입	금지	현행 금지규정 삭제하되 지원가능한 범위 별도 규정	좌동(佐同)
교원단결권	금지	유보	추후논의
노조정치활동	공직선거시 특정정당특정인 지지, 정치자금징수, 조합비 정치자금유용금지	금지규정 삭제, 노조결격사유로 정치 사회운동 주목적 인 경우 신설	노조결격 사유중 「사회운동」 조항삭제
해고근로자 조합원자격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자격인정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시까지 자격 인정	좌동
노조전임자임금	노조운영비 지원행위 부당 노동행위 규정	5년간 유예후 금지	5년유예후 금지, 단 조세감면 등 통해 노조자립기금 조성선언
변형근로제	관련규정없음	4주단위 주56시간 범위에서 도입	좌동, 단 1일 최장 근로시간 12시간으로 제한
정리해고제	법원판례에 의해 운영	신기술 신공정 도입, 산업구조변화, 생산규모 감축,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 양도 합병 인수 등 경우 허용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있을 경우 한해 허용, 시행은 2년 유예, 노동위 승인불필요
대체근로	쟁의기간중 관계없는자의 채용 및 대체금지	당해 사업내 대체 근로 및 신규하도급 허용, 대체근로 불가능한 유니온숍 외부대체 또는 일시적 채용허용	당해 사업내 대체 근로 허용, 신규하도급은 금지
무노동 무임금	관련법류 없음. 무노동무임금 원칙행정지도	사용자의 파업중 임금지급 및 노조의 지급요구 금지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고 임금관철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금지 및 처벌

'97년도 명장, 우수지도자 및 기능장려우수업체 포상안내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산업현장에서 기능의 의질을 견고 있는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한 명장, 기능인력양성에 공이 많은 우수지도자 및 기능장려에 모범을 보인 기능장려우수사업체를 선정, 아래와 같이 포상하오니 많은 신청과 추천있으시기 바랍니다.

1. 포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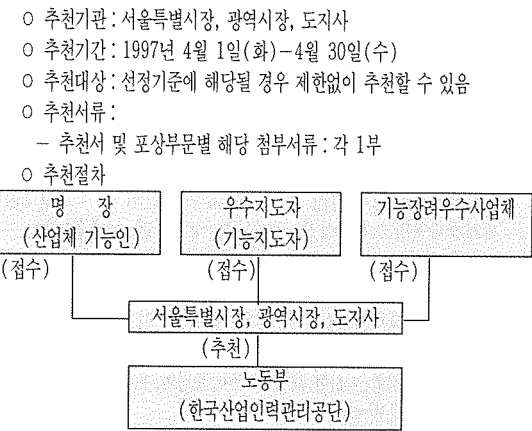
포상부문	인원및업체	포 상	우 대 내 용
명 장	35명 이내	정부포상	일시장려금 각 1,000만원 지급
우수지도자	5명 이내	정부포상	일시장려금 각 500만원 지급
기능장려	5개업체	정부포상	노동부지정 게시용 명판 수여
우수사업체	이내		

2. 선정기준

구 분	자 격
명 장	산업현장의 동일분야 및 직종에서 최고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고일 현재 20년이상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만40세이상인 자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다른 기능인의 귀감이 되는자 2. 작업공정의 개선이나 품질향상을 통하여 생산성 제고에 공이 있는자 * 필수요건 * 1. 명장직종 및 관련직무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계 자격취득자 또는 기능경기대회입상자(공고일 현재 50세 이상인 자는 자격취득자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아니어도 무방) 2.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닌자 3. 과거 같은 분야의 명장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자
우 수 지도자	교육법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고일 현재 20년이상 기능인력양성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교사(중합고등학교 실업교사 포함) 및 직업훈련교사 1.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자를 다수 배출한자 2. 기능인 양성 또는 지도에 지대한 공이 있는자 * 필수요건 * 1. 실과부장, 훈련부장등 이하의 교사 2. 공고일 현재 과거3년이내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자 3. 과거 우수지도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자
기능장려 우수 사업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사업체로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기능인을 우대하고 각종 기능장려사업을 실시하여 다른 사업체의 모범이 되는 대기업체 및 중소기업체 1. 채용시 학력 철폐등으로 기능인을 우대하는 기업 2. 승인, 승급, 임금등 인사제도가 기능인 우대기업 3.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명장을 다수 배출한 기업 4. 사업체내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기업 5. 사업내 직업훈련 및 산학협동훈련 실시 기업

6. 기능장 양성기관에 기능인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 단, 1~6호중 일부 실적이 없는 항이 있어도 접수가능함
 * 필수요건 *
 1. 공고일 현재 사업체 설립후 3년이 경과한 사업체
 2. 사업주가 공고일 현재, 과거3년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 사범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사업체
 3. 과거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사업체나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된 후 3년이상 경과된 사업체

3. 후보추천



4. 서식배부 및 접수

- 서식배부 및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지방노동사무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지방사무소
- 서식배부기간 : 1997년 3월 27일(목)~4월 30일(수)
- 접수기간 : 1997년 4월 1일(화)~4월 30일(수)
- 5. 발표 및 포상(예정) : 1997년 11월 3일(월)

6. 특 전

- 명장 : 정부포상, 명장증서 및 휘장수여, 일시장려금 및 매년 기능장려금지급, 해외산업시찰, 기능관련행사의 심사위원 위촉 등
- 우수지도자 : 정부포상, 일시장려금지급, 국내산업시찰 등
- 기능장려우수사업체 : 기능장려우수사업체 명판수여, 사업체장 정부포상, 정기근로감독면제, 사업내 직업훈련비용 감면(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업체에 한함) 등

7. 기타사항

- 포상일시 및 장소는 포상자 확정 후 개별 통지함.
- 추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천기관의 시·도 해당과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기능장려과 T(02)3271-9302로 문의하시기 바람.